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8월 8일, 배준영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8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2025.11.1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

체토론, 소위원회부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9.) 상정, 축조심사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1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5.12.16.)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배준영의원)

현행법은 철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의 경감, 국가철도공단 및 도시철도공사가 취득하는 고속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특례를 두고 있음.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이 일몰기한으로 곧 종료될 예정인데, 현재 철도망이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지방과 서울을 일일생활권으로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 대한민국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특례가 연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철도사업 지원을 위한 부동산 및 고속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경감 등의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6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등”이라 함)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할 것으로 조건으로 취득하는 철도차량과 철도건설사업·고속철도고속사업의 실시 이후 국가에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를 면제하고 있음(제1항 및 제2항).

또한, 한국철도공사가 특정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와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의 100분의 50을, 준고속·일반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고속철도차량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를 감면하고 있으며(제4항),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철도차량과 도시철도공사의 법인등기·구분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및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100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하고 있음(제5항).

개정안은 동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철도산업의 전문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설립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도시철도공사를 지원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일몰기한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례의 효과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유사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